

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운영 기준

I. 사업개요

- 지원목적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생활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 기회 제공
- 지원금액: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(연간 최대 240만원)

II. 지원기준

-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(수도권 및 충남 천안시 외 지역)에 해당하는 재학생
- 당해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및 C(70/100)학점 이상 이수

III. 우선지원

- 주거안정장학사업 교부금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,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 장학생 선발 및 지급
 -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
 - (2순위) 차상위계층
 - (3순위) 성적 높은 순
 - (4순위) 학년 낮은 순

IV. 지급제외

- 지정된 기한 내 지급요청서 제출 및 서약 등을 완료하지 않은 자
- 초과학기자 등 정규학기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휴학·제적·졸업 등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 지급 제외
- 방학 기간(7, 8월 및 1, 2월) 지급 제외